

## ◎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-2호

「국유재산법」 제73조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

###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압류사실 공시송달 공고

#### 1. 근거법규

- 가. 국유재산법 제73조(연체료 등의 징수)
- 나. 국세징수법 제 24조(강제징수)
- 다.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(송달)

#### 2. 공고기간: 2026. 1. 13.~ 2026. 1. 28.(16일)

※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#### 3. 공시송달 대상자

(단위 : 원)

성명 (상호)	주소 (사업장 주소)	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				반송사유
		세목명	납부기한	원금	가산금	
오지* (예쁜**)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길* (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*)	건물대여료	2024-6-15	1,036,870	60,040	1,096,910
		건물대여료	2024-6-15	2,767,450	160,250	2,927,700
		합계		3,804,320	220,290	4,024,610

#### 4. 압류내역

가. 압류연월일 : 2025. 11. 18. 압류

나. 압류재산의 표시

1) 신용카드 매출채권 :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매출채권 중 압류 당시의 채권액과 압류 이후에 발생될 신용카드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

2) 예금채권 :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과 그 이자(압류 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)로써 아래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(향후)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

1. 여러 종류의 예·적금이 있는 때에는
  - ①보통예금, ②저축예금, ③당좌예금, ④정기예금, ④정기적금, ⑤기타예금
2.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
3. 1, 2의 예금 중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
  - ①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
  - ②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로

※ 제3채무자 목록

상 호	주소지	사업자등록번호
DGB대구은행	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	502-81-07740
영동새마을금고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 20-1	302-82-02220
영동농협 중앙지점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 25	302-82-06115
영동농협 계산지점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28	302-83-06094
KB국민은행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	201-81-68693
영동농협 역전지점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88	302-82-02123
삼성카드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	202-81-45602
KB국민카드	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	101-86-61717
비씨카드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	214-81-37726
현대카드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	213-86-15419

4. 아울러, 귀하가 채납액을 납부할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 57조에 따라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리며, 채납액은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【☎(042) 611-1255】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월 13일

**충청지방우정청장**